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2. 1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12. 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개정으로 ‘골목형 상점가’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,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, 골목형상점가의 지정(안 제1조, 제2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, 지원사업,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

(안 제3조~제5조)

-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6조~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안건은 2020년 8월 12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·시행되어 “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”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가.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및 기준

- 안 제2조에서는 “골목형상점가 지정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2조제2항에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) 제2조제2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“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”을 정하였음. 제출된 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“점포밀집기준”과 “상인 조직 결성”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.
-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(안 제6조 ~ 제11조)

-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“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”의 설치 및 구성, 기능,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위해

“제척·기피·회피” 규정을 두고,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

- 종전의 “상점가”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상점가로 “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”로 골목 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,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특별법 개정과 그 내용을 구체화한 본 조례안의 발의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.
- 특히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던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11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개정으로 ‘골목형상점가’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,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, 골목형상점가의 지정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, 지원사업,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2) 행정규제심사 결과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3)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: 개선의견

- 위원 위촉시 성별의 균형적인 참여를 위한 개선의견을 반영(제6조 제5항)

라. 입법예고(2020. 10. 5. ~ 10. 25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,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
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

제3조(신청 절차)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수에서 제외한다.

1.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2.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.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3.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4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
5.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4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,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
2.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
3.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
4. 축제,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
5.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5조(지정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
2.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
1.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
2. 골목형상점가의 조성·발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

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국·소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

나.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 관련 시민단체·사회단체의 대표

다. 유통산업,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

라. 도시계획·개발, 건축,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2.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
4.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진 경우
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될 경우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당

사자가 되는 경우

2.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,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·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1. 심의·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
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 3.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

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